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5 선고 2024가단235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30㎡를 인도하고,

나. 1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
다. 2024. 6. 12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신동호

별지